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6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 박덕흠 · 엄태영 · 서천호

조지연 • 고동진 • 김예지

김정재 • 이종배 • 강승규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,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,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, 학습권 또는 군 작전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,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 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 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신고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

는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관리자 등의 요청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 5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신고장소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나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 서 집회 또는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	제8조(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
제한 통고) ① ~ ④ (생 략)	제한 통고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⑤
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	
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	
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	
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	
통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회	
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	
는 제1항을 준용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신고장소가 「유아교육
	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
	원이나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
	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
	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
	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
	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
	<u>우려가 있는 경우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